##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오기형・고민정・권향엽

김남근 • 김남희 • 박해철

박홍배 • 오세희 • 윤건영

위성곤 • 임미애 • 정진욱

진성준 • 차규근 • 한창민

허성무ㆍ허 영 의원

(179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.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, 일단 압류가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.

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, 임차료, 전기·수도·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

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,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246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6조의2(생계비계좌의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은 예금자(자연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압류금지생계비"라 한다)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(이하 이 조에서 "생계비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있다.
  - ②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,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  - ③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한다.
  -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246조의2(생계비계좌의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 관등"이라 한다)은 예금자(자연 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 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 하 이 조에서 "압류금지생계 비"라 한다)을 초과하여 예치 할 수 없는 계좌(이하 이 조에 서 "생계비계좌"라 한다)를 개 설할 수 있다. ②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 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 관등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 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, 예금 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에 생계 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 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

- ③ 금융기관등은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 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한다.
- 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